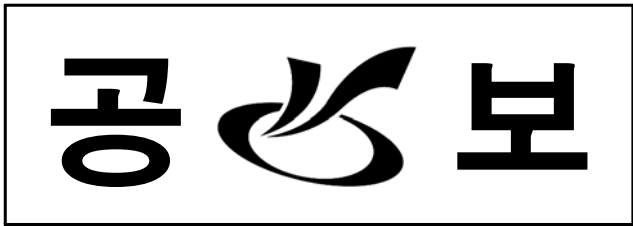


인천광역시서구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

선	기관의 장
람	

제 668호
2008년 11월 26일 수요일

차 례

규 칙

○ 인천광역시서구규칙 제708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등
일부개정규칙 2

훈 령

○ 인천광역시서구훈령 제266호 인천광역시서구토요일전일근무제운영규정
폐지규정 4

공 고

○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8-1016호 인천광역시 서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(안)
입법예고 5

회							
람							

발행 : 인천광역시서구 편집 : 기획홍보실

규 칙

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인천광역시서구청장 이 훈 국

2008년 11월 26일

인천광역시서구규칙 제708호

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

제1조(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의 개정)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16호 및 제18호 중 “재정경제부”를 각각 “기획재정부”로 한다.

제11조제40호 중 “농림부”를 “농림수산식품부”로 한다.

제26조제84호 중 “건설교통부”를 “국토해양부”로 한다.

제2조(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전결처리규칙의 개정)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전결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 실·과명의 재무과란 제31호 중 “재정부”를 “기획재정부”로 한다.

제3조(인천광역시 서구세 부과징수규칙의 개정) 인천광역시 서구세 부과징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8조제1항 중 “행정자치부”를 “행정안전부”로 한다.

제28조제2항, 제97조제6항 각 호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“행정자치

부장관”을 각각 “행정안전부장관”으로 한다.

제97조제6항제2호 중 “내무부장관”을 “행정안전부장관”으로 한다.

제4조(인천광역시 서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의 개정)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제17조제7항 중 “행정자치부”를 “행정안전부”로 한다.

제5조(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의 개정)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 중 “보건복지부장관”을 “보건복지가족부장관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훈 령

인천광역시서구토요일전일근무제운영규정 폐지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인천광역시서구청장 이 훈 국

2008년 11월 26일

인천광역시서구훈령 제266호

인천광역시서구토요일전일근무제운영규정 폐지규정

인천광역시서구토요일전일근무제운영규정은 폐지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공 고**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8-1016호**

인천광역시 서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08년 11월 25일

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**인천광역시 서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(안) 입법예고****1. 제정이유**

-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의 결정·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기록·보존하여 정책참여자의 공지를 제고함과 동시에 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,
- 추후에 유사정책 집행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실명제의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정책실명제의 대상과 범위를 규정하고 등록(안 제2조~제3조)
- 정책집행의 효율성 확보와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정책의 입안 및 집행과정, 담당자 실명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정책자료집 발간(안 제4조)
- 정책실명제 추진에 대한 사업평가와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정책실명제의 조기 정착 촉진(안 제6조~7조)

3. 의견제출

이 규칙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나 개인은 2008. 12.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(참조 : 기획홍보실)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【(우)404-701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길 323번지/☎032-560-4045/Fax032-560-4049】

-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,반 여부와 그 이유)
- 성명(단체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- 기타 참고사항

4. 참고사항

- 사무관리규정(대통령령) 제34조의2, 제34조의3
-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 제51조의2, 제51조의3

인천광역시 서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(안)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사무관리규정」 제3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에 대한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 (이하 “정책참여자”라 한다)를 실명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등록(이하 “정책실명제”라 한다)하고, 추진 경과를 관리하며 정책의 사후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정책 참여자의 긍지를 제고함과 동시에 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구정에 대한 신뢰를 증진하고 구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) ① 정책실명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대상으로 한다.

1. 주요 구정현안 사항 (구청장 공약사업 등)
 2. 10억원 이상의 대규모 공사 또는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
 3. 국제교류 및 통상협상
 4. 조례 및 규칙 등의 제정사항
 5. 기타 구의 주요사업 중 정책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책
- ② 정책실명제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참여자라 하되,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, 결재자, 설계자, 용역연구기관, 시공회사 및 대표, 감리자, 감독공무원, 준공검사자 등 사업에 참여한 모두를 포함한다.

제3조(정책실명제 등록) ①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(이하 “담당부서”라 한다)에서는 제2조제1항에 따라 매년 정책실명제 대상 정책을 결정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도 1월말까지 기획홍보실(이하 “총괄부서”라 한다)에 제출한다.

- ② 총괄부서에서는 담당부서로부터 받은 정책실명제 대상 정책에 대하여 자체 심사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등록번호를 부여해야 한다.
- ③ 건물 또는 교량 등과 같은 시설물의 경우는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별지 제3호서식과 같은 시설물 관리 표식을 실명으로 각인하여야 한다.
- ④ 총괄부서에서는 정책실명제 등록사항을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.

제4조(정책자료집 발간) ① 담당부서에서는 정책집행의 효율성 확보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책의 입안 및 집행과정, 담당자 실명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수록하여 발간하여야 한다.

1.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정책 추진과정 비망록
2. 계획에서부터 시행, 완결까지 관련된 모든 문서
 - 가. 계획서·보고서·추진계획표·일정표·심사분석결과 등
 - 나. 관련자 및 관련자별 업무분담내용
 - 다. 공청회·세미나 및 관계자회의의 기록
 - 라. 정책·사업 등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하게 된 경위, 관련자 및 관련 기록
- ② 담당부서에서는 발간한 정책자료집을 다음연도 1월까지 총괄부서에 2부 제출하여야 한다.
- ③ 총괄부서는 담당부서에서 제출한 정책자료집을 취합하고 매년 2월에 구 기록관에 제출하여 보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- ④ 관련문서 중 비밀문서는 「보안업무규정」에 따라 정책자료집을 비밀문서로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
- ⑤ 정책자료집에 수록된 내용중 정보공개 대상의 판단은 담당부서에서 정보공개 관련 법령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.

제5조(정책 이력관리) ① 담당부서는 정책실명제 대상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사 등으로 변경되는 경우 지체 없이 총괄부서에 공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.

② 총괄부서는 정책실명제 대상정책의 변동사항이 통보되면 지체 없이 수정하여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.

제6조(정책평가) ① 총괄부서에서는 매년 1회 해당연도에 종결된 정책실명제 대상 정책에 대하여 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.

② 평가는 자체 평가지표에 따라 시행하되,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 또는 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.

제7조(인센티브) ① 구청장은 정책실명제 사업 평가에 따른 우수자 및 우수부서에 대하여 그 업적에 따라 포상 또는 격려할 수 있다.

② 표창 등은 「인천광역시서구포상조례」를 준용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